

안산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(박은경 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9-294
----------	-------

발의년월일 : 2023. 10. 4.

발 의 자 : 박은경 의원 외 10명

1. 개정이유

-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 내용을 확대하고, 조례의 유효기간을 삭제하여, 안산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알기 쉬운 법령 기준에 따른 조문 정비(안 제1조 ~ 제5조)
- 지원 내용 확대 (안 제4조)
- 지원중지 및 환수 조항 신설 (안 제6조)
- 부칙 유효기간 삭제 (안 부칙)

3. 개정조례안 및 신·구조문 대비표 : 붙임 1

4. 현행조례안 : 붙임 2

5. 관계법령발췌서 : 붙임 3

6. 예산수반사항 : 붙임 4

7. 입법예고결과 : 의견 없음

- 입법예고 : 2023. 9. 21. ~ 2023. 9. 26.

8. 부서검토의견 : 붙임 5

【붙임1】 개정조례안 및 신·구조문 대비표

안산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안산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 중 “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따른 수급자와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”을 “안산시에 거주하는”으로, “지원”을 “지원과 복지 증진”으로 한다.

제2조를 삭제하고, 제3조부터 제6조까지를 각각 제2조부터 제5조까지로 하며, 제6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6조(지원중지 및 환수) ① 시장은 지원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지할 수 있다.

1. 지원목적이 달성되었다고 판단한 경우
2. 지원 대상자의 사망, 다른 지역으로의 전출이 확인되었을 경우
3. 지원대상자가 지원을 거부하였을 경우
4.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

② 시장은 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지원액을 환수하여야 한다.

제2조(중전의 제3조)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저소득주민의 범위 및 지원 대상자는 안산시 내”를 “지원 대상자는 안산시”로 한다.

제3조(중전의 제4조) 본문 중 “제3조”를 “제2조”로 한다.

제4조(중전의 제5조)의 제목 “(지원 방법 및 지원항목)” 을 “(지원 방법 및 지원 내용)” 으로 하고, 같은 조 제1항 중 “지역화폐를” 을 “지역화폐 등” 로 하며, 같은 조 제2항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.

2. 의료비

3. 냉방비·난방비

제5조(중전의 제6조)의 제목 “(지원 대상자 선정기준 등)” 을 “(지원 대상자 선정 등)” 으로 하고,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지원 대상자 선정기준, 지원 기간, 지원 수준, 지원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.

부칙 제2조를 삭제한다.

소 속		안산시의회
입 안 자	시 의 원	박은경 의원 대표발의 (행정 3577)

신·구조문 대비표

현행	개정안
<p>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<u>국민기초생활 보장법</u>」에 따른 <u>수급자와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주민의 생활 안정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</u></p>	<p>제1조(목적) ----- <u>안산시에 거주하는</u>----- ----- ----- ----- <u>지원과 복지 증진</u>----- -----.</p>
<p>제2조(용어의 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“<u>필요비용</u>”이란 <u>난방비, 생계비 등에 필요한 경비를 말한다.</u> 2. “<u>지원</u>”이란 <u>필요비용, 현물 등을 지원받고자 하는 사람에게 그 실정에 맞는 지원 형태의 것을 말한다.</u> 	<p><삭 제></p>
<p>제3조(지원 대상자의 범위) <u>저소득주민의 범위 및 지원 대상자는 안산시 내에 거주하고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.</u></p> <p>1. ~ 3. (생략)</p>	<p>제2조(지원 대상자의 범위) <u>지원 대상자는 안산시</u>----- ----- -----.</p> <p>1. ~ 3. (현행과 같음)</p>

제4조(지원 대상자의 결정) 시장은 제3조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지원 대상자를 결정한다. 다만, 지원 대상자의 거주지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 시장은 본인 또는 그 친족, 그 밖의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해 실제 거주지를 조사·확인한 후 지원 대상으로 결정할 수 있다.

제5조(지원 방법 및 지원항목) ① 지원 대상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생활 안정에 필요한 현금, 물품, 지역화폐를 지원할 수 있다.

② 지원 대상자에 대한 지원은 다음 각호 중 필요한 항목으로 한다.

1. (생 략)
2. 난방비
3. 전기 요금
4. (생 략)

제6조(지원 대상자 선정기준 등) 지원 대상자 선정기준, 지원 기간, 지원 수준 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.

제3조(지원 대상자의 결정) -----
제2조-----
-----.

-----.

제4조(지원 방법 및 지원 내용) ① --

----- 지역
화폐 등을 -----.

② -----
-----.

1. (현행과 같음)
2. 의료비
3. 냉방비·난방비
4. (현행과 같음)

제5조(지원 대상자 선정 등) 지원 대상자 선정기준, 지원 기간, 지원 수준, 지원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.

<신 설>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유효기간) 이 조례는 2023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.

제6조(지원중지 및 환수) ① 시장은 지원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지할 수 있다.

1. 지원목적이 달성되었다고 판단한 경우

2. 지원 대상자의 사망, 다른 지역으로의 전출이 확인되었을 경우

3. 지원대상자가 지원을 거부하였을 경우

4.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

② 시장은 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지원액을 환수하여야 한다.

부 칙

(현행과 같음)

<삭 제>